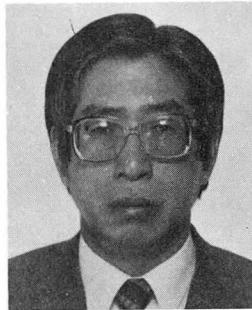


시험연구의 영역을 확대해야

방재시험소가 개소된 지 5주년이 되는 동안 관계자 여러분들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 활동기간이 짧은데도 불구하고 예상 이상의 업적을 올렸으며, 또한 어느 기관이든 발족초기에 겪게되는 어려운 상황을 무난히 극복하고 발전의 기틀을 치실히 다져온 데 대하여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국민소득의 증대와 과학문명의 발달에 따라 생활형태가 달라지고 새로운 산업분야가 급속히 등장하면서 우리들이 당면하는 위협이 양적으로 확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도 심화되어 왔다. 이와같이 산업사회에 노출된 위험들중에는 초기에 우리들의 힘으로는 통제관리가 거의 불가능한 것들이 많았으나 이들 상황을 극복하고자 열성을 다하여 노력하는 사람들의 혁신적인 조사연구활동으로 점차 여러 분야에서 위험 발생가능성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축적되어 위험의 경감 내지 제거에 상당한 연구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많은 경험에 의하면 위협이 생성노출된 시점으로부터 이에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을 창출하고, 나아가 대응조치를 취하기까지에는 시차가 있기 마련이다. 또한 손해 발생을 원천적으로 봉쇄시키려 하거나 축소시키려고 노력하는 데에는



이상화
<보험감독원 조사부장>

효율적인 조직체계를 갖추고, 우수한 능력이 있는 인력을 확보하며 이들이 부과받은 업무활동에 대해 사명감을 가지고 조사연구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자금지원이 가능하여야 한다.

경우에 따라 재난을 당할 수가 있는 사람과 재물에 대해 사후적이나마 경제적 불안을 줄일 수 있도록 보험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많은 대응책중의 하나로 되어 그 이용범위가 확대되면서 사회적으로 광범하게 정착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재난으로 손해를 입고 난 뒤에 원상복구를 하거나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시설을 이용함으로써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보험제도 자체는 훌륭한 것임에 틀림없으나, 이와같이 사회적으로 보험에 의존하게 되는 제도에서는 사후에 재산상 손해에

대한 구제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국가전체로서 볼 때는 당해 사고로 인한 인명과 재산상 손실은 보험자의 부담으로 이전되었을 뿐으로 복구가 필요한 피해사실 자체는 엄연히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재해에 의한 손실발생은 그대로 남아 있으며,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손해를 입은 개인 또는 기업은 그 손해에 대해 경제적 책임을 지지 않고 보험자에게 그 책임이 이전되므로 손해부담주체가 보험자로 달라지는 효과만을 초래 할 뿐이다.

여기에 우리들은 손해발생에 대한 보험보상을 필요로 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예방적 차원에서의 활동이 더 긴요함을 절감하게 된다. 될 수만 있다면 이러한 위험예방조치가 위험취급에 있어서 최선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활동과정에서 발생되는 재난은 예고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이를 예측하는데도 우리의 능력이 한정되어 있으며, 어느날 갑자기 재난이 닥치기 때문에 언제나 위험발생에 대비하는 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불의의 재난을 막을 수 있다. 이러한 자세에 의해 재난을 예방하게 되면 경제적인 면에서도 손해를 피할 수 있어 편안한 마음으로 안심하고 가정생활을 유지할 수 있고, 기업활동도 매우 안정된

분위기에서 영위할 수 있게 된다. 손해발생에 대한 개연성을 우려하여 미리 예방대책을 마련해 둔 경우에는 사고에 의한 손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전반에 걸쳐 재화의 손실을 감소시키는 이점이 있다.

우리사회는 60년대 이래 6차에 걸친 경제개발계획의 성공적 수행으로 소득수준이 전체적으로 향상되어 급속한 생활패턴의 변화를 거치면서 점차 서구화의 추세를 보이고 사회적 욕구내용도 다양화되는 한편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의 전환과정을 거치면서 과학기술의 발달로 많은 분야에서 새로운 위협이 등장함과 동시에 재해의 질량이 종전과는 달리 급속히 생성되어 점차 확대일로에 놓이게 되었다.

이들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특수물건의 화재사고에 대한 대응책으로 1973년 2월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상의 손실을 예방하고 신속한 재해복구와 인명피해에 대한 적정보상으로 국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하도록 하였다.

이와같은 정부방침과 의지에 따라 법정기관인 한국화재보험협회가 설립되어 특수물건에 대해의 무적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임무를 부여하고, 또한 부보물건에 대해서는 점검활동을 통하여 인명과 재산에 대한 사고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고 있다. 물론 외국에서도 화보협회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민영 또는



공영방재기관들이 있어 방재활동을 위한 업무와 화재 등의 위험에 관해 관리하고 있다.

미국의 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 (NFPA), Risk and Insurance Management Society (RIMS), Underwriters Laboratories Inc(UL), 캐나다의 Underwriters Laboratories of Canada(ULC), 영국의 Loss Prevention Council(LPC), Fire Research Station(FRS), 일본의 소방연구소, 소방설비안전센터, 소방검정협회 등이 있으며, 이 밖에도 많은 국가에서 이들 기관과 유사한 방재기관이 있어 재난을 예방하는 역할을 행하고 있다.

대체로 설립운영 주체면에서는 정부와 공공단체 또는 민영보험자 단체로 되어 있으며, 기관에 따라 화재위험에 국한하여 운영되는 경

우도 있고, 이와는 달리 화재 뿐만 아니라 산업재해에 관련된 위험을 예방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기도 하다.

또한 이들 기관에서 관장하는 업무로는 재해예방을 위한 조사연구와 기술상담, 건축자재와 소방설비에 대한 인증, 부보물건의 안전기준제정과 점검, 보험요율산정에 필요한 통계제정과 점검, 보험요율산정에 필요한 통계집적, 위험평가와 등급결정, 교육훈련과 세미나개최, 소비자의 보험관계여론조사, 방재관련서적발간과 자료제공, 화재나 지진발생시의 구조활동을 수행하는데 있으며, 보험자들이 운영하는 방재단체에서는 위험관리서비스와 함께 보험청약 물건에 대한 조사분석, 보험조건의 심사결정을 통하여 당해 물건을 인수하는 등 영업활동을 겸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이들 방재

시험기관에서 요구하는 건축자재나 소화설비에 대한 성능합격기준은 소방법 등의 관계법규에서 정한 기준보다 훨씬 강화된 내용으로 되어있다.

방재시험소는 미국 UL기관의 활동상황과 비슷하게 화재사고 예방업무와 관련된 방재관계전문가들을 확보하고 있으며 각종시험설비를 비치하여 소화기, 거품소화약제, 경보설비, 건축자재, 방염제품 등에 대해 성능시험을 거쳐 방화 또는 안전을 보장하는 관련제품 품질인증제도(FILK)를 도입하여 제조업체에 대해 품질향상을 촉진시키고 시험에 합격된 우량한 제품인 경우에는 시장경쟁력을 높혀줄 뿐만 아니라 사용자에게 구매제품의 선택율을 용이하게 하고 사용시에도 손해발생을 줄일 수 있으며, 보험요율의 적용에도 유리하게 되는 등 각종 서비스상의 이점이 있다. 방재시험소의 이러한 기능수행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장점으로는 보험회사의 경영에 크게 기여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사회 전반에 걸쳐 재해발생을 축소 또는 억제하는 효과로 나타나고 있다.

방재시험소의 역할이 화보협회에 부설된 기관이라는 성격 때문에 손해보험분야중에서 화재위험에 관한 시험연구를 수행해 그 활동영역이 한정된 아쉬움이 있다. 화보협회의 보험인수 활동범위가 단계적으로 축소되고 있으나, 방재시험소의 경제사회에 대한 기여도를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그 기능을 확대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발전방향을 몇 가지 살펴보면,

첫째로, 현재 예산에서 자체수입원이 되는 인증비용, 시험수수료, 회비 등은 인건비를 제외한 지출예산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부족예산차액은 화보협회로부터 할당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증업무 등에서 활동영역의 확대를 적극 추진하여 예산상의 독립채산이 가능하도록 그 방법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로, 조직과 인력면에서 다른 산업분야의 급속한 성장발전을 감안하여 이와 병행하거나, 아니면 앞서가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조직의 확대와 인력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본다. 물론 이에 대한 전제조건으로 예산확보가 뒷받침되어야 하나 손해보험회사로부터의 자금지원은 한계가 있으므로 국가적 차원에서 보조가 있었으면 한다. 이와같은 방재시험기관의 활동과 운영이 필요한 것은 재난을 예방하여 사회경제적인 면에서 가계와 기업의 경제활동에 크게 공헌하게 되므로 보험분야에 연관시켜 움직이는 기관으로 국한시키지 말고, 조직활동의 독립성을 점차 확대함과 동시에 분야별 전문인력을 더욱 많이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로, 방재시험소의 활동범위가 화재보험 위주의 손해보험영역에 국한되어 시험연구영역이 일정한계내에 머물러 이것이 발전을 저해하는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방재시험소가 화보협회

의 부설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때문이라고 본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화재위험에 대한 재해예방활동과 아울러 모든 재산위험은 물론 인명에 대한 안전과 예방조치를 강구할 수 있는 시험연구활동이 보다 적극적으로 권장되어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상실 또는 상해사고에도 사전 예방방법을 추구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끝으로 방재를 위한 연구시험활동에 있어서 특정한 프로젝트를 소화하는데 대학이나 전담연구소 등과 제휴하여 공동작업으로 연구성과를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운영해야 할 것이다. 이와같은 산학협동에 의한 연구활동은 상호보완적이기 때문에 다른 분야에서도 활발히 추진되고 있으며 그 실적 또한 대단한 결실을 거둔 경우가 많음을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

본인의 보험업계 근무경험에 의하면 방재시험소가 발족된지 5년이라는 단기간에 지금과 같이 성장발전한 것은 관계 임직원들의 혼신적인 노고가 그 밑거름이 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기반을 다져온 노력에 덧붙여서 질적 발전을 위해 더 많은 열성을 쏟아야 할 것이다. 특히 첨단산업분야에 대한 재해방지 연구에도 깊은 관심을 갖고 접근하기를 희망한다. ⓥ